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 반영
 - 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연임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항)
 - 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주민 공개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안 제11조제3항 신설)
 - 4) ‘사용·수익허가’ 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5조, 제18조 부터 제22조, 제30조)
-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 정비(안 제26조제5항제4호)

4.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의3 및 제31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항 및 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고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 1부

2. 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2022. 1. 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times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격}) \div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 4. 20.>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8. 12. 4.>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p>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p>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p> <p>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p>

<p><신 설></p>	<p>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공유재산심의회의”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p>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 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으며</u>.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⑥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u>,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u>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u>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u>공유재산 관리계획</u>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 ----- <u>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u>----- . <u>공유재산관리계획</u>----- ----- -----.</p>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 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 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신 설>

② ----- 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

<p>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u>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u>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p>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2. (생략)</p> <p>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 ① ~ ③ (생략)</p> <p>④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청사 내 구유재산을 구 금고로</p>	<p><u>미터</u> <u>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u> <u>미터</u></p> <p>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u>무상사용허가대상</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용허가</u>-----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p>
--	--

<p>지정된 금융기관에 <u>사용·수익 허가</u> 하는 경우</p> <p>2. (생략)</p> <p>제19조(<u>사용·수익허가</u>)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의무</p> <p>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p> <p>7. (생략)</p> <p>제20조(<u>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u>)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p>	<p>----- <u>사용허가</u>-----</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19조(<u>사용허가</u>) -----</p> <p><u>사용허가</u>-----</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용허가</u>-----</p> <p>-----</p> <p>6. <u>사용허가</u>-----</p> <p>-----</p> <p>7. (현행과 같음)</p> <p>제20조(<u>사용허가부의 비치</u>) -----</p> <p>----- <u>사</u></p> <p><u>용허가부</u>-----</p> <p>-----.</p> <p>-----.</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p> <p>-----</p> <p>-----</p> <p>-----</p> <p>----- <u>사용허가</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	---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금천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 시설

사용허가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3. (현행과 같음)

4.-----또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5. ~ 11. (생략)

⑥ (생략)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 3. (생략)

③ ~ ⑦ (생략)

⑧ 금천구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5. ~ 11.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사용 -----

-----.